# 제254회 충청북도의회 임시회 <br> 2006．10．18～11．1（15일 간） 

충청북도공무원당직수당지급조례 일부개정조례안
專間委員㭘言報台

企劃行政委員會

## 충청북도공무원당직수당지급조례 일부개정조례안 

## 1. 제출자 : 충청북도지사

## 2. 제출 및 회부일자

가. 제출일자 : 2006년 10 월 11 일
나. 회부일자 : 2006년 10 월 12 일

## 3. 제안이유

당직근무자의 대체휴무 여부와 관계없이 당직수당이 동일하여 대체휴무 가 없는 당직근무자의 상대적 불이익 및 근무의욕이 저하됨에 따라 당직 수당을 차등지급하여 당직근무자의 사기진작을 도모하고자 함.

## 4. 주요내용

대체휴무가 있는 당직은 종전과 동일하게 당직수당을 30,000 원으로 하 고, 대체휴무가 없는 당직에 대하여는 당직수당을 50,000 원으로 인상하여 차등지급

## 5. 검토의견

○ 충청북도공무원당직수당지급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의견을 보고드리겠음.

○ 본 조례안은 대체휴무가 없는 당직자 즉, 숙직근무 다음날이 토요일 또는 공휴일이거나 토요일 또는 공휴일의 일직근무자에게는 당직수 당을 현행 30,000 원에서 50,000 원으로 인상하여 대체휴무가 있는 당 직근무자와 차등지급하므로써 대체휴무가 없는 당직자의 사기를 진 작시키고 상대적 불이익 해소하고자 하는 것으로 이견은 없습니다.

○ 다만, 조례 제명은 띄어쓰기 규정에 맞게 「충청북도 공무원 당직수 당 지급조례 」로 수정하여야 하젰습니다.

붙임 : 충청북도공무원 당직수당 지급조례 일부개정조폐안.

